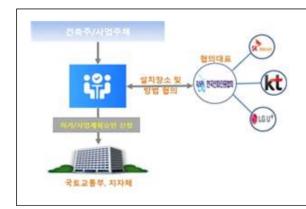
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의무화법 시행 안내

2017. 5. 26.일부터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국민안전 보장 및 효과적 재난관리를 위해 대규모 건축물 등에 대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.

<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및 설치장소>

구 분	설 치 대 상	설치장소		
		각 지하층	각 지상층	고시기준에 적합한 장소
1. 건축물 (연면적 합계 1,000㎡ 이상)	가.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(주택단지에 건설된 건축 물은 2.공동주택단지 규정 준용)	0	0	
	나.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(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·터널·지하상가 및 지하에 건축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 포함)	0		
2. 공동주택단지	가.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	0	0	
	나. 5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(연면적 합계 1,000㎡ 이상)	0		
3. 도시철도시설	도시철도시설			0

- 건축주/사업주체/도시철도건설사는 건축물 허가신청 또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방법 등을 **협의대표*와 협의하여야 합니다.**
 - * 협의대표 : 「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, 이동통신사업자 모두를 대표하여 협의를 전담하는 자



■ 협의대표(한국전파진흥협회)

이동통신사업자(SKT, KT, LGU+) 모두를 대표하여 건축주, 사업주체 등과 협의를 전담하는 기관

■ 설계신청시스템(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)

o 전화 : 02-317-6030

o E-mail: help@rapa.or.kr

o 홈페이지 바로가기 ☞ http://mobile.rapa.or.kr